


2026년 제4회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 월 9 일

여수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성현구** 

여수시 규칙 제876호

붙임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76호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2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관련 국소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생략)</p> <p>2. <u>여수시시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시민위원 2명</u></p> <p>3. (생략)</p> <p>④·⑤ (생략)</p>	<p>제4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2명</u></p> <p>3.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